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1441호

구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인가 취소된 구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제9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1. 지급 신청내용

- 가. 승인취소된 조합 : 구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나. 지급신청인 : 구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김영희
- 다. 신청금액 : 금1,519,544,107원
- 라. 신 청 일 : 2019. 10. 04.

2. 지급계획

- 가. 지급금액 : 금1,519,544,100원
- 나. 지급대상 : 구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김영희 및 이해관계자
- 다. 지급방법 : 신청 대표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라. 공고기간 : 2019. 11. 28. ~ 12. 20.
- 마.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351-7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14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구민편익 증진과 구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351-6056, Fax : 02-351-5613 또는 E-mail : dlwnsr99@ep.gp.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제출자	2019. 11. . 감사담당관
--------------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국민편익 증진과 국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관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

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지원과 : 합의 완료(감사담당관-11664호)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2) 입법예고 : 2019. 11. 28. ~ 12. 18.(20일간)
-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가족정책과-25799호)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2019. 11월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심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